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8. 2. 7 WED
14:00~17: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개회사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환영사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축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좌장 박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발표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김범준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한중수 KB금융지주 감사위원장

토론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김준철 딜로이트안진 부대표
최원진 JKL파트너스 상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주최 국회 김용태 의원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후원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매일경제

Program

» 프로그램

시간	구분	행사내용	비고
13:30~14:00		등록	
14:00~14:05		개회사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14:05~14:10		환영사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14:10~14:15		축사 1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14:15~14:20		축사 2	최종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14:20~15:20		발표 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안)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감사위원회 운영 매뉴얼, 체크리스트	김범준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발표 3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KB금융지주)	한종수 (KB금융지주 감사위원장)
15:20~15:40		휴식	
15:40~16:40		좌장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토론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김준철 (딜로이트안진 부대표)
			최원진 (JKL파트너스 상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16:40~17:00		질의응답	
17:00		폐회	

Contents

주 제 발 표

- »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안)01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 » 감사위원회 운영 매뉴얼, 체크리스트17
김범준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 »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KB금융지주)27
한종수 (KB금융지주 감사위원장)

붙 임

- »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47

- » 감사 운영 모범규준(안)6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1 주제발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기준 제정(안)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정재규 선임연구위원(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8.02.07

Contents

I. 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2.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의 필요성

II. 추진경과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IV. 향후계획

1. 추진배경(1)

I. 배경 및 필요성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17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

- 분식회계·부실감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외부감사의 3대 축인 「선임-감사-감독」 제도를 대폭 개편,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
- 객관적인 외부감사 환경조성,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경각심 제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개선, 철저한 내부 회계관리를 통한 분식소지 사전 차단을 기함
- 내부 감사기구-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 정보교환이 활성화 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



- 감사 및 감사위원회 등 내부 감사기구의 감시, 통제 강화 등 그 역할과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판단

1. 추진배경(2)

I. 배경 및 필요성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 통과

-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 주기적 지정제(6+3) 도입, 감사인 지정사유 추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내부감사기구로의 선임권한 이전), 독립적인 감사의견 제시를 위한 감사환경 개선
-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감사인의 노력 요구
 - 표준감사시간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회계법인의 의무 신설
 - *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 평가 및 개선권고 실시,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근거 신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항목 추가 등 보고의무 강화
-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재무제표 작성 의무 강화
- 회사의 분식회계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상향

2.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의 필요성(1)

1. 배경 및 필요성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한 축이기도 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업무 및 회계 감사·감독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

- 감사위원회는 업무 및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향후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 일부 감사위원회가 법규인식 부족 및 감독책임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외부·내부감사간 기능연계 부족으로 회계의혹, 내부통제의 허점 등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이 공유되지 않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



-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 「감사위원회 매뉴얼·체크리스트」 작성 등 “표준화된 자율적 기준” 마련이 절실

2.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의 필요성(2)

1. 배경 및 필요성

기존 감사위원회 관련 표준적인 단순 직무규정, 금융업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모범규준 등과 달리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하게 종합적 체계화

감사위원회에 대한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최선관행(Best Practices)”을 제시

1	감사위원회에 대한 종합적 접근 - 외부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연결고리 중점 고려 - 모범규준과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만 보면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2	감사위원회 운영 매뉴얼: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련 법규정, 세부 실행지침, 사례 예시 등을 제시
3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리스트
4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
5	지배구조개선 관점을 반영하여 다각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의 연계성 고려

Contents

- I. 배경 및 필요성
- II. 추진경과
 - 1. 핵심 Agenda
 - 2. 추진개요
-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 IV. 향후계획

1. 핵심 Agenda

II. 추진경과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감사)의 운영 실질화를 통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특히 회계제도 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기준과 매뉴얼 제시

Agenda		주요 내용
모범규준(안) 마련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 설치,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최선관행을 원칙중심으로 제시 ②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부서, 외부감사인과의 연계를 중시 ③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구조적 성격 반영
	감사	①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둔 회사의 경우에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별도로 제시 ② 회의체 구조인 감사위원회와의 차별성 반영(선임, 자격요건 등)
감사위원회 및 감사 운영 매뉴얼 작성		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하위 규정을 제시 ②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제시하여 구체적 실무적 활용성 증시
감사위원회 및 감사 운영 체크리스트 작성		① 단순한 질문지 형태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리스트 ②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 고려

2. 추진 개요(1)

II. 추진경과

연구진 및 자문교수단

연구진	주요경력	자문교수단	전문분야	주요경력
정재규박사	(現)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한중수 교수	재무회계, 회계감사	(現)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現) KB금융 감사위원회 위원장
전규안교수	(現)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김화진 교수	기업지배구조, M&A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위원
김법준교수	(現) 가톨릭대 경영학부	이미현 교수	금융법	(現)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희우 교수	회계학	(現)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주요 자문의견 (1, 2차 자문회의의 주요 의견)

- (1) 제시된 내용의 강약을 조절하여 기업규모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2) 모범기준은 간결하며 명확해야 임팩트를 줄 수 있으므로 간결하면서도 핵심사항만을 담을 필요
- (3) 모범기준과 법률규정 간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면서도 모범기준의 미래지향적인 기능 유념
- (4) 모범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 (5) 감사위원회에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해당산업에 대한 전문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2. 추진개요(2)

II. 추진경과

모범기준(안) 마련 시 중점 고려사항

1. 실무에서 실행 가능한 모범기준
현실에서의 사용성 증시 필요
기업규모에 따른 실행 가능성도 염두
2.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최소 1인 이상의 회계전문가 참여 관련
의견 반영
3.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소통
실행 양식 등 사례 제시, 관련 4대 회계법
인의 의견수렴
4. (향후) 모범기준 이행수준 평가
감사기구의 운영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
는 지표 개발 및 정기 점검 필요

기타 사항

- 모범기준의 필수조항, 권고조항 구분을 위하여 표현상의 차이를 두어 구별
- 감사보조조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 유념

Contents

- I. 배경 및 필요성
- II. 추진경과
-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 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 2. 감사 운영 모범규준
- IV. 향후계획

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1)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국내 원칙과 주요 해외 원칙들을 참고하여 미래지향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목차		
전문	1)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4)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시스템
1. 내부감사기구	2) 감사위원회 활동	5) 내부감사부서
1) 감사위원회	3) 감사위원회 평가	5.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2) 내부감사부서	4) 감사위원회 보수	1)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2.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5)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2) 외부감사 실시단계
1) 감사위원회 구성	4.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3) 외부감사 종료단계
2) 감사위원 선임과 증임	1) 직무와 권한	6.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3)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 재무보고	1)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3. 감사위원회 운영	3) 내부신고	2)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

감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지속가능경영 성취

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2)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전문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기업규모, 업종 등 구체적 환경에 따른 유연한 적용 인정

항목	내용	주요 이슈
제정배경 및 목적	- 분식회계·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회계정보의 질 제고 -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최선관행을 제시	
내용과 구성	- 전문과 각 구성부문 등 전체 여섯 부문	① 내부감사기구, ② 구성·선임 및 자격요건, ③ 감사위원회 운영, ④ 역할과 책임, ⑤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⑥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모범규준의 적용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기업 - 규모, 업종에 따른 유연한 적용 선언	① 특히 금융회사 등을 포함하여 이 모범규준보다 더 강화되거나 우선 적용되는 관련 법규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함을 명확화

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3)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1.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명문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내부감사부서 설치 명시

항목	내용	주요 이슈
1.1 감사위원회	- 대규모 상장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 권고 -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업무 등에 관한 규정 명문화 - 감사위원회는 규정의 타당성평가 및 공시 - 감사업무의 충실한 수행, 가장 중요한 권한과 책임은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① 모범규준 상 대규모 상장기업의 기준 -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으로 명시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동일 ②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동시 수행 (현행 법률체계와 조화) - 회계전문가 참여, 내부감사부서 활용 - 적법성 감사, 타당성 감사
1.2 내부감사부서	- 내부감사부서 설치 명시 - 이사회는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규정을 명문화	①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은 내부감사부서 설치가 필요함을 명확히 제시

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4)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2.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 선임과 종임,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상세히 제시

항목	내용	주요 이슈
2.1 감사위원회 구성	-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를 권고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 - 위원장은 호선하며 사외이사로 함	① 감사위원회 구성에 회계전문가 참여 필요성 강조(매뉴얼)
2.2 선임과 종임	- 최소 1인 이상은 이사선임 안건과 분리하여 주주총회에서 별도 의결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 일정 기간 임기 보장, 연임 또는 종임 가능	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최소 1인 분리선임 ②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임기보장, 과도한 연임 자제 등 필요,
2.3 자격요건	-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 강조 - 위원장은 회계, 재무 관련 상당한 전문지식 보유	①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업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식 또는 경험 필요

15

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5)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3.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활동 및 평가

항목	내용	주요 이슈
3.1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운영규정 제정, 매년 검토 후 필요 시 개정 -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공시	① 매뉴얼에 운영규정 예시
3.2 감사위원회 활동	- 회의 및 비회의의 활동 연간계획 수립 - 충분한 회의시간과 정보 확보 - 감사위원별로 회의 내용 기록 - 감사업무 필요정보에 자유로운 접근	① 분기별 최소 1회 회의 개최 권고 ② 감사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방문 비공식 회의 등도 수행 가능
3.3 감사위원회 평가	- 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 정기적 평가 - 평가항목: 독립성과 전문성,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 감독, 리스크관리 등 - 매년 자체평가 권고	① 매뉴얼에 감사위원회 평가항목 예시 ②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외부평가 관련 사항은 모범규준에서는 언급 하지 않음

16

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6)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3.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의 보수, 교육

항목	내용	주요 이슈
3.4 감사위원 보수	- 감사위원의 투입시간과 노력,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수준 결정 - 보상위원회가 있는 경우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① 감사위원의 경우 상근 여부, 그 책임과 투입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수 산정 명확화 ② 감사위원별 지급보수와 보수 산정기준, 지급유형 등을 공시
3.5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제공할 필요 - 선임 후 입문교육과 업무수행 과정에 보수교육 필요 - 업무내용 및 역할, 책임과 회사의 경영환경, 주요 이슈 등 교육	① 교육 내용, 시간, 방법 등 공시

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7)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4. 역할과 책임

직무와 권한, 재무보고, 내부신고

항목	내용	주요 이슈
4.1 직무와 권한	- 주요 감사업무 명시 - 임직원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감사 실시 - 감사위원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감시 - 선관의무, 비밀유지 의무, 감사체계의 수립	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를 반영하여 예시
4.2 재무보고	-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 확보 - 회계기준 및 변경사항의 타당성 평가 등 - 회계 및 재무 기능의 평가(담당부서, 책임자)	① (매뉴얼) 특수관계자와 거래 관련 고려사항 예시 ② (매뉴얼) 실적예측정보의 정합성 검토
4.3 내부신고	- 불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균형 잡히고 독립적 조사, 적절한 후속조치	① 매뉴얼에 내부신고시스템의 일반적 특성 예시

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8)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4. 역할과 책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시스템, 내부감사부서

항목	내용	주요 이슈
4.4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 여부 및 내부 조직단위 간 적절한 견제 여부 등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방안 모색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 리스크관리시스템 감독 	① (매뉴얼) 윤리, 준법프로그램 감독 관련 사항 예시
4.5 내부 감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부서 구성 - 내부감사부서의 역할, 예산, 조직의 적절성 평가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독 - 적절한 전문성과 충분한 인원 확보 	① 감사위원회에 내부감사부서의 장 임면권 또는 동의권 부여가 바람직함을 제시 ② 내부감사부서의 장의 직급 및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적 예산은 직접 언급하지 않음 ③ (매뉴얼) 내부감사 증점 검토영역 예시

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9)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5.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외부감사 실시 및 종료단계

항목	내용	주요 이슈
5.1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 전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감사시간, 징계 여부 등 요소 고려 - 선임 후 관련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 - 외부감사계약의 검토 등 	① 선임 시 “징계 여부” 고려(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 신설 반영, 2018.11.1 시행)
5.2 외부감사 실시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의사소통 - 재무제표 작성 점검(회사 직접 작성 여부) - 외부감사과정에 대한 점검 등 	① 분기 1회 이상의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금융감독원 모범사례) ②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사항 관리, 점검
5.3 외부감사 종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결과 검토, 외부감사의견 평가 -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처리 시 적용된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 검증 ② 외부감사인 평가 질문서 예시

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10)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6.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

항목	내용	주요 이슈
6.1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성과를 매년 검토, 필요 시 개선방안을 이사회에 제안 - 감사결과의 이사회 보고 - 이사의 부정행위 등의 보고 등 -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견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논의 및 주주에의 보고	
6.2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	- 감사위원회 권한과 활동 주요 내용 공시 - 재무제표 관련 주요 내용의 공시 -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주주총회 참석 - 주요 주주 및 주요 채권자와의 의사소통	①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범위의 주요 주주 및 주요 채권자와의 의사소통을 권고

2. 감사 운영 모범규준(1)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운영 모범규준을 제시

감사 운영 모범규준 목차		매뉴얼, 체크리스트
전문	3) 내부신고	- 모범규준의 실행방안, 근거, 구체적인 운영 지침, 사례 등 제시 - 모범규준의 항목별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세부적인 체크리스트 작성
1. 내부감사기구	4)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시스템	
2. 감사 선임 및 자격요건	5) 내부감사부서	
3. 감사 운영	5.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1) 감사운영규정 2) 감사의 활동	1)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3) 감사의 평가	2) 외부감사 실시단계	
4) 감사의 보수	3) 외부감사 종료단계	
5) 감사에 대한 교육	6.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4. 감사의 역할과 책임	1)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1) 직무와 권한 2) 재무보고	2)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	

감사 운영의 내실화로 회계정보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경영 성취

2. 감사 운영 모범규준(2)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내부감사기구로 감사를 둔 기업을 위하여 별도로 운영규준과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제시
회의체인 감사위원회와 다른 점을 고려하되 기능이 감사직무 수행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

항목	내용	주요 이슈
내부감사기구	- 감사를 둔 경우에도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바람직함을 명시	
감사의 선임 및 자격요건	- 독립적인 감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권고 - 감사의 임기 3년 보장 - 감사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 보유 명시	① 현행 상법의 경우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감사 활동	- 감사운영규정의 제정 - 연간계획의 수립 - 감사를 둔 상장회사의 경우 상근이 바람직함을 명시	

23

2. 감사 운영 모범규준(3)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내부감사기구로 감사를 둔 기업을 위하여 별도로 운영규준과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제시
회의체인 감사위원회와 다른 점을 고려하되 기능이 감사직무 수행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

항목	내용	주요 이슈
감사의 역할과 책임	-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 확인 - 내부신고제도의 적절성 평가 -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 확보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의 실시 및 종료단계에서 긴밀한 의사소통	① (매뉴얼) 외부감사인 평가표 예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 이사회, 주요 주주 및 채권자 등과 의사소통	

24

Contents

- I. 배경 및 필요성
- II. 추진경과
- III. 모범규준(안) 주요 내용
- IV. 향후 계획**
 - 1. 의견수렴 및 모범규준 제정
 - 2. 모범규준 이행수준 평가

1. 의견수렴 및 모범규준 제정

IV. 향후 계획

공청회 이후 감독기관 및 관련 업계, 상장회사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한 후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공표

구분	내용	주요 이슈
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자율규제기관)	① 기존 제도, 추진 중인 회계제도 개혁 세부방안과의 조화 ②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방안
상장회사	- 상장회사 대표기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회)	① 직접 영향을 받는 상장회사의 의견 수렴

※ 4대 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감사)와 외부감사인간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사항은 의견 수렴을 완료하여 이미 반영함

2. 모범규준 이행수준 평가

IV. 향후 계획

모범규준 제정 이후 모범규준의 이행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유도

구분	내용	비고
감사위원회 운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 -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회사 등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평가가 필요한지 검토 - 인센티브 부여를 중심으로 평가결과 활용방안 모색 	① 모범규준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감사 운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 중 감사불 둔 경우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도모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2주제발표

감사위원회 운영 매뉴얼, 체크리스트

김범준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기준의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국회정무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김범준

2018. 2.7

Contents

- I.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기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의 목적
- II.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기준 매뉴얼의 주요내용
- III.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기준 체크리스트의 주요내용
- IV.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기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

1.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규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의 목적

국내 원칙과 주요 해외 원칙 들을 참고하여 미래지향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최선관행(Best Practices)을 제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목차		매뉴얼, 체크리스트
前文	4.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 모범규준의 실행방안, 근거, 구체적인 운영 지침 등 제시
1. 내부감사기구	1) 직무와 권한	
2. 구성 및 선임, 자격요건	2) 재무보고	
3. 감사위원회 운영	3) 내부신고(Whistleblowing)	
1) 운영규정	4)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시스템	- 모범규준의 각 항목별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세부적인 체크리스트 작성
2) 감사위원회 활동	5) 내부감사부서	
3) 감사위원회 평가	5.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4) 감사위원회 보수	6.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5)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		



감사기구 운영의 내실화로 회계투명성제고와 지속가능경영 성취

1.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규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의 목적

매뉴얼 :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의 규범성 및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및 다양한 내용을 기반으로 모범규준의 해설서 겸 실천지침서로서의 역할

체크리스트 : 모범규준의 주요항목 준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질문 형태의 리스트

구분	매뉴얼	체크리스트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범규준의 구체적 세부지침 ② 모범규준의 각 원칙에 대한 구체적 근거 및 논의사항 정리 ③ 모범규준을 실행하기 위한 표준양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범규준을 실천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지 형태 ② 모범규준의 주요 원칙을 세부 항목화하여 기업 실무자들이 감사위원회 운영을 준비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용이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의 구성 (사외이사 비율에 관한 국내법, 모범규준, 해외 주요 원칙 등을 제시하고 국내 현실에서의 Best Practices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Q.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Q.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II.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규준 매뉴얼의 주요내용(1)

2.3.4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자격 요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매뉴얼) 회계 및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정해놓은 자격 및 경력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적용하고 있는 회계원칙에 대한 이해
- 회사가 수행한 회계추정, 총당금, 적립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계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감사해 본 경험
-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

(출처) 미국 SEC의 전문성 규정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7 CFR Parts 228, 229, and 249

II.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규준 매뉴얼의 주요내용(2)

3.1.1 (운영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일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본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2조 (구성)

-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제3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II.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규준 매뉴얼의 주요내용(3)

3.3.2 (평가항목)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 감독,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업무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포함하며 감사위원회 활동 전반을 포함한다.

<사례> 감사위원회 평가항목 예시 (일부)

1. 감사위원회 구조와 운영

주요내용	평가점수	만점	의견
1.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가?			
2.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면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가?			
3. 만약 감사위원이 재무적인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가?			
⋮			
⋮			

II.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규준 매뉴얼의 주요내용(4)

5.2.1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의사소통)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 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사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논의사항 예시

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 (1) 재무보고 담당부서 구성원의 역량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가?
- (2)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는 외부감사법을 준수하였는가?

2. 경영진 관련

- (1) 경영진은 회계 및 감사 이슈를 이해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 (2) 경영진은 새로운 회계기준서의 적용 등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는가?
- (3) 회사는 감사업무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II.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규준 매뉴얼의 주요내용(4)

5.2.1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의사소통)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 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사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논의사항 예시 (계속)

3. 감사인 관련

- (1) 감사수행 중 직면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2) 외부감사인의 관점에서 회사에서 위험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인가? 이 분야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적절한가? 이 분야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 적절하게 확인하였는가?
- (3)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 향후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 (4) 경험 있는 감사인원이 참여하고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보수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5) 감사수행과정에서 제시한 수정사항이 존재하였는가? 존재하였다면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가?
- (6) 핵심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s)에 대하여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협의한 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가?

III.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규준 체크리스트의 주요내용(1)

감사위원회 운영 체크리스트 예시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1. 내부감사부서			
1.1 감사위원회			
(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가?			
(2)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는가?			
(3)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는가?			
(4)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였는가?			
(5) 위(4)의 평가결과 및 그에 따른 사후 처리에 관하여 공시하였는가?			
⋮			
⋮			

III.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규준 체크리스트의 주요내용(2)

감사위원회 운영 체크리스트 예시(계속)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2.2 감사위원 선임과 종임			
(1)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가?			
(2)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중 최소한 1명의 감사위원은 이사선임 안건과 분리하여 의결하고 있는가?			
(3)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대주주 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가?			
(4) 독립적인 사외이사 추천위원회가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있는가?			
(5) 감사위원의 임기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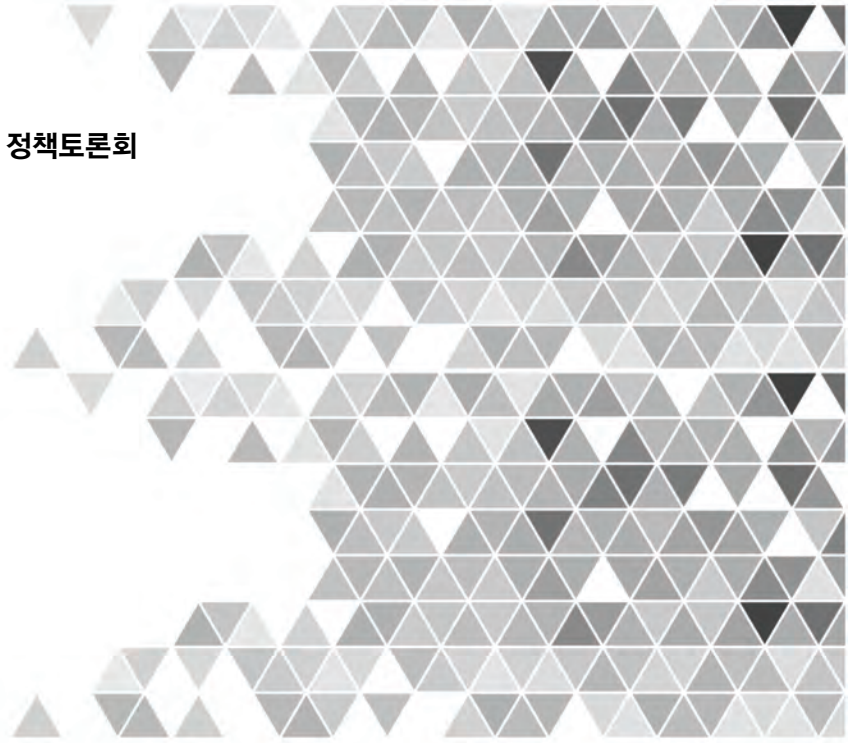
IV.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규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활용방안

기업의 경영자,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 및 감독당국은 감사위원회 운영모범규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체	활용방안
경영자	• 경영자는 매뉴얼/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감사부서 등 관련 인력/재정 지원
이사회	• 이사회는 하부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및 감사위원의 보상 등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는데 활용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규정, 회의, 운영, 교육, 평가, 외부감사인과 관계 및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주주	• 주주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활용
감독당국	• 감독당국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향후 감사인 지정 및 감리대상 선정에 활용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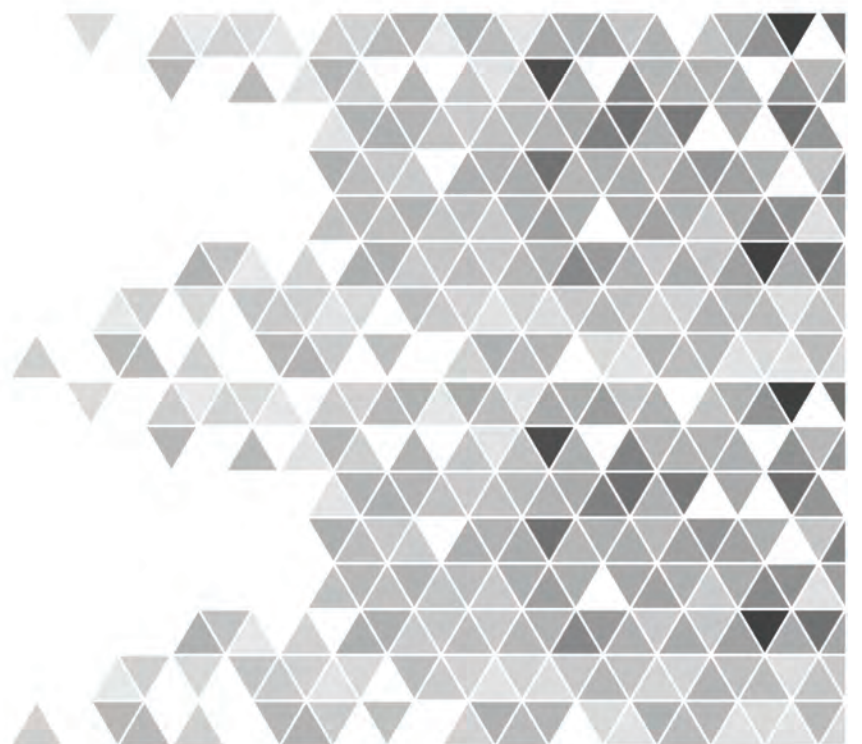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3주제발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KB금융지주)

한종수 (KB금융지주 감사위원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청회 발표자료(2018.2.7)>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

- 금융회사 실제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KB금융지주 감사위원장 한 종 수



Contents

I. 발표자 소개

II. KB금융그룹 소개

- [1] 그룹 소개
- [2] 감사조직 소개

III.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

- [1] 감사위원회 제도
- [2] 감사위원회 운영
- [3] 감사위원회 활동

IV. Q&A



I. 발표자 소개

< 주요 경력 >

-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위원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 (現) 대한회계학회 회장
- (現)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
- (現)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現) KB금융지주 사외이사(2015.3월~)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 (現) KB금융지주 감사위원장(2016.3월~)



한 종 수

II. KB금융그룹 소개 [III] 그룹 소개

그룹 Highlight



[기준: 2017.9월말]

- ✓ The Banker誌 선정, 전세계 60위, 국내 1위 금융그룹
[2017.7월기준]
- ✓ 거래 고객수 3,359만명
[2017.11월말 기준]
- ✓ 시가총액 26.5조원, KOSPI 전체 8위, 금융주 1위 [2017년말 기준]
- ✓ 2017 NBCI(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 서비스
• 은행 부문 브랜드 1위 (14년 연속)
[2017년]
- ✓ 2017 다운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지수 2년 연속 편입, 은행부문 세계 2위
[2017년]

* 유동자산 시가총액기준 글로벌 상위 2,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상위 약 10% 기업을 편입

Ⅱ. KB금융그룹 소개 [2] 그룹 소개

✓ 그룹 감사조직 현황

< 13개 회사(지주 및 12개 계열사) 204명 감사인력으로 구성 >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 [1] 감사위원회 제도 ①

✓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 KB금융지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 상법의 특례법으로 금융회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직무집행의 독립성을 보장 받고 감사직무를 수행
 - 상법 및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재결의 할 수 없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
 - 각종 내규에 제한 없는 경영정보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감사활동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보장
- 전원 사외이사(4명)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
 -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을 포함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간 호선을 통해 임기 1년으로 선출(※ 통상적으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출)
-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회계 및 재무전문가, 전직 경영인, 금융연구위원,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III 감사위원회 제도 ②

참고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위원장	한 종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 대한회계학회 회장 (現)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 (現)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재무회계 및 회계감사 전문가
위원	유 석 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캐피탈,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카드 대표이사 여신금융협회장 삼성전자 고문 	금융업 CEO 경력
	박 재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은행, 신한은행, 대우증권 사외이사 (現)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정책 및 리스크관리 전문가
	김유니스경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준법감시인 일본시티은행 수석준법감시인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및 준법감시인 (現)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준법감시 및 법률 전문가(변호사)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III 감사위원회 제도 ③

✓ 감사위원회 자격요건

- 감사위원은 사외이사로서,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정관 등 내규에서 정한 KB만의 별도 감사위원 자격요건도 충족하도록 요구됨**
 -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다양한 경로로 추천 받아 후보군을 관리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과한 후보 중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KB만의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재차 검증 후 추천
 - 특히,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업무 관련하여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역량을 보유한 감사위원중에서 선출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III 감사위원회 제도 ④

참고 KB금융지주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의 감사위원 자격요건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 분야에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업무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III 감사위원회 제도 ⑤

✓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내부감사부서를 설치·운영



- 내부감사부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감사인력으로 구성
 - '적격 감사역 기준' 운영을 통해 적정 감사인력을 선발하고 추가 감사인력소요 시 그룹 인력공모제도, 계열사 전문감사인력 파견 등을 통해 적시에 충원
 - 감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공인회계사, IT전문감사역 등을 충원하고 내부감사인력을 지속 증원하여 ('13년 6명 → '18년 15명) **타금융지주 대비 많은 감사역수 보유**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집행임원 및 감사부서장에 대한 임면 동의 및 성과평가 권한 보유**
 - 내부감사활동에 대한 감독을 위해 **감사담당집행임원 및 감사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 경영진(CEO)의 평가 및 조정 없이 감사위원회의 평가로 확정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Ⅲ 감사위원회 제도 ⑥

참고 KB금융지주 '적격 감사역 기준'

<감사업무지침 제3조(감사역의 자격 등)>

1. 금융지주회사 또는 계열사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단, 해당 계열사 규정상 계열사 감사역 제한 대상자 제외)
2. 공인회계사(CPA,AICPA), 공인내부감사사(CIA) 등 전문인력
3. 기타 감사담당 집행임원이 감사역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감사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는 감사역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감사반은 당해 수감부서에서 최근 1년 이내 근무한 자 또는 당해 수감부서에 가족·친인척이 근무하는 자는 제외하여 구성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Ⅳ 감사위원회 운영 ①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감사위원회의 권한, 의무, 회의소집, 처리안건 등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 필요 시 이사회결의를 통해 개정
-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감사담당 집행 임원에게 별도의 직무를 위임 ⇒ 위임 받은 업무 수행결과를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장에게 보고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② 감사위원회 운영 ②

✓ 감사위원회 운영 계획 및 회의 개최

- 감사위원회의 효율적·효과적 활동을 위해 **연간 감사위원회 개최 일정 및 감사업무계획을 사전에 수립**
 - 분기 1회 정기 감사위원회와 필요 시 개최되는 임시 감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연간 일정을 사전에 수립
 - ※ 2018년 총 9회 개최 예정(정기 4회, 임시 5회, 총 처리(예상)안건 46건)
- **감사위원회가 회의소집, 부의안건, 안건내용 및 부의주기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
 - 감사위원회의 충실한 직무 수행 및 안건 누락 방지를 위해 '감사위원회 업무 체크리스트' 작성 운영
- **감사위원회가 독립적·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시간 및 자료를 제공**
 - 회의시간을 감안한 적정수의 안건 부의, 회의 개최 7일전 안건 배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실시 등
 - ※ 효과적인 회의 진행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회의 시 안건 관련 담당자 배석
- **결의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의결**
 - 2017년 결의안건 11건 중 2건(18%) 보류 또는 수정 가결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③ 감사위원회 운영 ③

참고 KB금융지주의 감사위원회 업무 체크리스트

구분	검토대상 및 내용	현황	비율 (%)										비고		
			2017-12-31	2017-12-31	2017-12-31	2017-12-31	2017-12-31	2017-12-31	2017-12-31	2017-12-31	2017-12-31	2017-12-31			
주요업무 운영 실적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적시·정확한 보고	2017-12-31 기준 실적 보고 완료	●												주요업무 실적 보고
	감사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한 정기·임시 보고	2017-12-31 기준 정기·임시 보고 완료	●												정기·임시 보고 실적 보고
회의소집 및 운영 실적	회의소집 횟수 및 회의실 운영 실적	2017-12-31 기준 정기·임시 회의소집 횟수 및 회의실 운영 실적 보고	●												회의소집 횟수 및 회의실 운영 실적 보고
	회의소집 횟수 및 회의실 운영 실적에 대한 정기·임시 보고	2017-12-31 기준 정기·임시 회의소집 횟수 및 회의실 운영 실적 보고	●												정기·임시 보고 실적 보고
의사결정 및 운영 실적	의사결정 실적에 대한 정기·임시 보고	2017-12-31 기준 정기·임시 의사결정 실적 보고	●												의사결정 실적 보고
	의사결정 실적에 대한 정기·임시 보고	2017-12-31 기준 정기·임시 의사결정 실적 보고	●												정기·임시 보고 실적 보고
주요업무 운영 실적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정기·임시 보고	2017-12-31 기준 정기·임시 실적 보고 완료	●												주요업무 실적 보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정기·임시 보고	2017-12-31 기준 정기·임시 실적 보고 완료	●												정기·임시 보고 실적 보고
의사결정 및 운영 실적	의사결정 실적에 대한 정기·임시 보고	2017-12-31 기준 정기·임시 의사결정 실적 보고	●												의사결정 실적 보고
	의사결정 실적에 대한 정기·임시 보고	2017-12-31 기준 정기·임시 의사결정 실적 보고	●												정기·임시 보고 실적 보고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 [2] 감사위원회 운영 ④

✓ 감사위원회 교육

- **감사위원 최초 선임 후 감사위원회 업무내용 등에 대한 사전 입문교육 실시**
 - 감사위원회 일정, 운영방식, 처리안건, 외부감사인 감독 등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내용 및 감사업무 관련 현안이슈사항 중심으로 안내
- **감사위원회 업무 관련 각종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주관기관

- 감사위원과 감사를 위한 Audit Committee Handbook 프로그램 •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
-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 SEC 상장기업 감사위원회 역할 •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
- 임직원 대상 기업분석 특강 • KB국민은행
- 감사위원회의 역할 · 책임에 관한 세미나 개최 (KB금융그룹 감사위원 및 감사담당 임직원 대상) • KB금융지주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 [2] 감사위원회 운영 ⑤

참고 KB금융지주의 감사위원회의 역할 · 책임에 관한 세미나 개최 사례

당첨자 명단

안녕하십니까?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조영희 사무입니다.

어느덧 여름 무더위의 끝자락으로 환한 가을을 느끼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대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KB금융지주 감사부에서는 KB금융그룹내 감사위원(감사) 및 감사업무 실무자를 모시고 「KB금융그룹 감사위원회 역할 · 책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세미나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국내 전문가분들과 감사위원회의 제도 뿐만 아니라 국내 · 외 선진기업 사례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20.
KB금융지주 상무 000 드림

KB금융그룹 감사위원의 역할 · 책임에 관한 세미나

▷ 주 관 : KB금융지주 감사부
▷ 일 시 : 2016.10.31(월) 14시 ~ 17시
▷ 장 소 : 여의도본사 1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KB금융그룹 감사위원(감사), 감사부서장, 감사위원회실무담당자 등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프로그램	참석자	비 고
14:00~14:05	Registration	-	-
14:05~14:08	일일 인사	300명	(300명중100명)
14:08~14:10	인사 발표	300명	(300명중100명)
14:10~14:45	Session 1 감사위원의 역할, 조직구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 역할 및 임명절차	300명	(300명중100명)
14:45~15:15	Session 2 1981 연차제와 관련된 세정기법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사례	300명	(300명중100명)
15:15~15:30	Break time	-	-
15:30~16:00	Session 3 1981 연차제와 관련된 세정기법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사례	300명	(300명중100명)
16:00~16:30	Session 4 연차제와 관련된 세정기법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사례	300명	(300명중100명)
16:30~16:45	Session 5 KB그룹 감사위원회 운영	300명	(300명중100명)
16:45~16:55	질의 응답	-	-
16:55~17:00	일일 인사	300명	(300명중100명)

CSG Compliance Servi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6/33)

KB금융지주

36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3] 감사위원회 활동 ①

✓ 내부감사부서 관리 · 감독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감사활동에 대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보고 받고 연간 감사수행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내부감사활동을 통해 발견된 주요 내부통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을 중점 논의
- 감사위원장과 내부감사부서간 원활한 Communication을 통해 감사업무와 관련된 주요 이슈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
 - 정기 · 임시 감사위원회 회의와는 별도로 감사위원장과 감사담당집행임원, 감사실무팀장간 분기 1회 이상 Meeting을 통해 내부감사활동의 실질적 추진결과를 공유
- 계열사 내부감사활동에 대한 보고체제 정립을 통해 지주회사 감사위원회의 그룹 내부감사활동 통할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
 - 계열사 감사위원회 활동 내용(처리안건, 처리결과 등)에 대해 반기 1회 검토
 - 주요 계열사(은행,증권,손보,카드 등)로부터 '자체감사활동 및 금융사고 발행 현황'을 반기 1회 청취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3] 감사위원회 활동 ②

✓ 내부감사부서 관리 · 감독(계속)

- 감사위원회는 그룹 내부감사기능 통할을 위해 계열사 상근감사위원회에 대한 성과평가 권한 일부 보유
 - 계열사 자체 내부감사활동, 내부통제시스템수준, 그룹 감사업무협조도 등을 평가(전체 배점의 80%)
- 감사위원회와 계열사 상근감사위원간 Meeting(반기 1회)를 통해 그룹 내부통제 현안 등을 상호 공유
 - 계열사 및 금융업권 내부통제 주요 이슈사항, 내부감사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 계열사 내부통제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 앞 즉시 보고체계 운영
 - 계열사에서 지주회사 감사위원회 앞 보고를 요청한 사항 또는 계열사로부터 주요 정보사항* 중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즉시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위원회 안건 부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 금융사고 발생, 감독기관 검사결과, 금융질서 문란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에 따른 평판훼손 가능성 등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 [3] 감사위원회 활동 ③

참고 감사위원회와 계열사 상근감사위원 Meeting 사례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와 계열사 상근감사위원 Meeting 안내

늘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와 계열사 상근감사위원간 상호 소통의 필요성 및 계열사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공유를 위해 다음과 같이 Meeting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1. 일정

가. 일시: 2017.10.13(금) 오전 10:30 ~ 13:00
 나. 장소: 여의도 대리(아트호텔) 2층 Meeting Room 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Tel: 02-2090-8000)

2. 세부 진행순서

시간	세부 내용	발표자	비고
~ 10:30	Reception		
10:30 ~ 10:35 [5 분]	[안 내] -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일일 안내 등		
10:35 ~ 10:40 [5 분]	[감사위원장 말함] - 인사말씀 등	한동수 위원장 (KB금융지주 감사위원장)	
10:40 ~ 10:55 [15 분]	[Session I] 감사위원 말함 - 인사말씀 등	감사위원	
10:55 ~ 11:40 [45 분]	[Session II] 계열사 상근감사위원 말함 - 인사말씀 등	계열사 상근감사위원	
11:40 ~	오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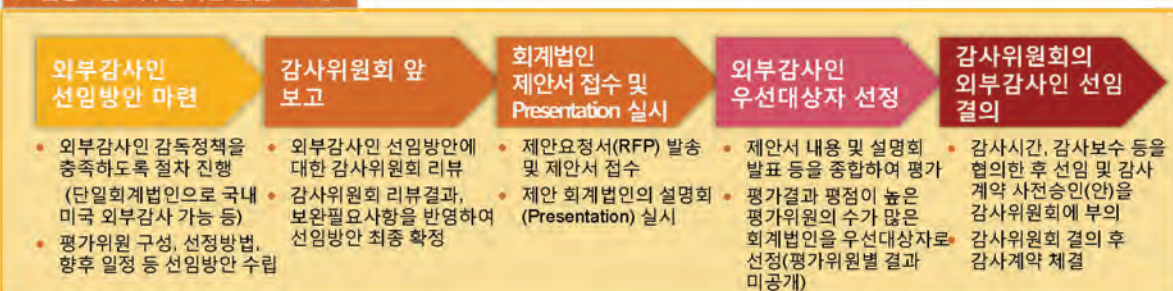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 [3] 감사위원회 활동 ④

✓ 외부감사인 선임, 감독 및 평가

●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 외부감사인 선임방안 및 일정을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여 심도 있게 논의
- 국내법 및 미국법에 따라 평가위원은 감사위원회 전원과 지주회사 경영진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수가 평가위원중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외부감사품질 확보 및 감사보수영향 최소화를 위해 **감사보수는 평가항목에서 제외**
- 평가항목은 업체 신뢰성, 감사수행역량, 감사방법론, Presentation 충실도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

KB금융그룹 외부감사인 선임프로세스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3] 감사위원회 활동 ⑤

참고 외부감사인 선정 평가표

20**~20**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정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00회계법인	00회계법인	비고
업체의 신뢰성 (20점)	회계법인의 연혁, 조직현황	3			
	회계법인의 재무현황 및 수입현황	3			
	공인회계사 및 전문가 보유현황	4			
	최근 3년간의 장리결과 조치내용 및 건수 등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정정증서 빈도 및 내용)	6			
	최근 3년간의 소송 건수 및 내용 등	4			
감사수행역량의 적정성 (25점)	감사(SEC상장기관 포함) 및 <u>비감사</u> 서비스 수행실력	7			
	내부 Quality control 정책 및 절차	5			
	Global 차원에서외 감사자선 내용	7			
	독립성관리를 위한 내부정책 및 절차	6			
감사방법론의 적정성 (45점)	KB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위험평가방법	8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방법론	6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감사방법론	7			
	KB그룹 <u>회계감사</u> 팀 운영 계획	7			
	감사위원과의 Communication 방법	6			
감사 투입인력 및 감사 투입시간	11				
프린트레이션 충실도 (10점)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5			
	<u>프린트레이션</u> 의 이해도 및 답변 충실도	5			
합계		100			

KB 금융그룹

평가자: (인)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3] 감사위원회 활동 ⑥

✓ 외부감사인 선임, 감독 및 평가(계속)

- 국내·외 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감독의무 이행을 위해 '외부감사인 감독정책'을 운영
 - 지주회사 및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을 동일 회계법인으로 선임
 - 외부감사인 독립성을 위해 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일체의 비감사서비스 제공 불가
다만, 국내·외법에서 허용하는 세무서비스, 실사(Due Diligence), 확인서신(Comfort Letter), 교육은 가능
 - 지주회사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의 감사·비감사서비스계약에 대해 사전 승인하고 업무효율성을 위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열사 감사위원회에 사전 승인 위임
 - 외부감사인 소속 전·현직 직원 채용에 대해 감독
 -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해 감독 및 평가 실시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비공개회의 개최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3] 감사위원회 활동 ⑦

✓ 외부감사인 선임, 감독 및 평가(계속)

-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사전승인 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을 보고 받음
 - 연간 감사수행일정 및 감사범위, 독립성 관리절차, 감사위원회와의 Communication Plan, 부정위험 등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연간 감사계획을 보고
- 외부감사인은 정기(분기 1회) 감사위원회에 경영진의 참석 없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사항 및 발견사항에 대해 보고
 -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자산건전성 현황 등 분기 재무제표 확인 내용 및 결과 뿐만 아니라, 향후 외부감사인 입장에서 회계처리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슈 가능사항을 함께 보고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비공개회의(반기 1회)를 정례화
 -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이슈사항 및 감사애로사항 등 논의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3] 감사위원회 활동 ⑧

✓ 외부감사인 선임, 감독 및 평가(계속)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감사과정에서 수행된 검토내용과 결과를 보고 받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한 왜곡표시 유무 및 기말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검토사항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 되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실시
 -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참여인력, 감사수행, 감사위원회와의 Communication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주요 내용
외부감사인 평가항목	✓ 감사계획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감사계획 보고 여부, 감사인력의 전문성 보유여부, 감사품질 및 독립성 평가를 위한 자체 인프라 적정성 여부, 비감사서비스 제공 유무 및 사전승인 여부 등
	✓ 감사수행의 적정성	● 재무제표 감사 적정성, 감사계획 대비 실제 감사투입 여부, 감사수행 시 충분한 자료를 제공 받았는지 여부, 외부감독기관의 감리결과 쟁점사항 또는 개선요구사항 등
	✓ 감사위원회와의 Communication 적정성	● 감사위원회 정기적 참석 및 의견 교류, 감사과정에서의 내부감사부서와의 협조, 향후 개정될 회계/감사기준 보고 등

- 연간 외부감사인 활동 평가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반 감독 활동*에 반영
 *차기년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반영,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감사비감사서비스 사전승인, 감사인력 교체 요구 등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3] 감사위원회 활동 ⑨

참고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평가 체크리스트

<p>1. 감사계획 및 참여인력 등의 적정성</p> <p>①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감사계획을 보고하였는가? 보고하였다면 감사계획에서 식별한 회사의 위험과 감사활동은 적절하며, 부정위험 및 내부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가?</p> <p>② 현장감사 및 실사 등에 투입되는 감사 인력은 금융산업이나 회계·감사 이슈에 특화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가?</p> <p>③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및 독립성 평가를 위한 자체 인드라는 적정한가?</p> <p>④ 감사보수는 회사의 위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인가? 외부감사인의 한국 내 총수익과 당사에서의 총 수익을 비교할 때 당사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없는가? <small>→ 2019회계연도 00회계연도의 한국내 총수익: 감사(), 외부감사() → 2019년순이익의 수입: 감사(), 외부감사() → 2019년순이익의 수입: 감사(), 외부감사()</small></p> <p>⑤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외부감사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영향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전승인 후 진행하였는가?</p>	<p>3.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적정성</p> <p>①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감사결과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위원과의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의견교류를 하고 있는가?</p> <p>② 외부감사인이 감사진행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 또는 우려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적시에 직접 보고하는가?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가? <small>→ 초·중·고등교육기관 내부통제리 디비전 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회계정책/회계 등에 대한 의견, 감사수령 중 취약한 국외적인 어퍼콜, 경영회의 직무행위에 대한 무의형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점(다른 사실 등</small></p> <p>③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유의성이 있는 권고사항을 발굴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한 적이 있는가?</p> <p>④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수립, 감사실시 과정에서 내부감사부서의 협조를 원활히 이루어지는가?</p> <p>⑤ 외부감사인은 향후 개정될 회계감사기준 등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논의하였는가?</p>
<p>2. 감사수행의 적정성</p> <p>⑥ 감사위원회와 절차, 감사의견 및 권고사항 등을 감안할 때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고 회사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이 적정하며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었는가?</p> <p>⑦ 실제 감사 수행 시 감사인력, 투입시간, 중점 감사사항 등은 감사계획 보고 시 보고한 내용으로 이행되었는가? 감사인력 및 감사계획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였는가?</p> <p>⑧ 외부감사인이 회사 경영진을 대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재무제표와 관련한 자료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가?</p> <p>⑨ 외부감사인이 현장감사 수행 시 회사로부터 필요한 인력 및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았으며, 외부감사인과 회사 경영진의 의견 불일치 사항이 현안화 해결되었는가?</p> <p>⑩ 외부감사인의 자체 내부통제 검토와 금융위원회·PCAOB 등 감독기관에 의한 관리결과 등 경영사항, 제재 또는 개선요구사항이 있었는가? 있다면 그에 대한 시수조치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p>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3] 감사위원회 활동 ⑩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 감사위원회는 국내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미비점과 취약점을 시정하도록 조치
- KB금융지주는 미국 NYSE 상장되어 있어 미국 SOX법에 의한 '재무보고내부통제'도 별도 실시
-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근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대상 재무제표

- 개별 재무제표

대상 범위

- KB금융지주

공시

-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보고내부통제

- 미국 SOX법(Sarbanes-Oxley Act)
-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기준서 No.5 등

- 연결 재무제표

- KB금융지주 + 국내외 계열사

- 20-F 연차보고서(SEC)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3] 감사위원회 활동 ①

✓ 내부통제시스템 감독

- 감사위원회는 지주 및 12개 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을 연 1회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스템 개선 및 적정성 유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는 계열사 대표이사 및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시 반영하여 계열사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
-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그룹 내부통제 현안 및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연간 준법감시 업무계획을 매년 초 감사위원회에 보고
 - 내부통제 관련 업무추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매 분기 '준법감시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내부통제 관련 이슈 또는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3] 감사위원회 활동 ②

참고 계열사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법 및 결과

- 평가방법 : 계열사 내부통제시스템을 COSO 5요소 평가항목별로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
 - ※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의 내부통제 포상 또는 기관제재,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 등에 대해서는 평가등급 산정 시 가감

구분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COSO 5요소별 평가항목	경영진 성향 및 책무, 조직구조 및 역량, 권한 부여 및 위임	목표, 위험인식 및 평가, 위험에 대한 대응	역할 및 책임, 직무분리 및 안전장치, 규정과 절차, 금융사고 예방	회계, 정보 및 의사소통	상시적 모니터링, 소비자보호 및 내·외부 민원, 자점 검사 및 준법감시

※ COSO 5요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속 민간연구조직인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기업을 연구하여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한 5가지 요소

- 평가결과

구분	KB ■■	KB ○○	KB ▣▣	KB ▲▲	KB △△	KB ◆◆	KB ★★	KB ☆☆	KB ◎◎	KB ◇◇	KB ○○	KB **	
201*년	등급 (평점)	2등급- (2.22)	3등급+ (2.63)	3등급+ (2.74)	3등급+ (2.89)	3등급- (3.08)	3등급+ (2.87)	3등급- (3.03)	3등급+ (2.62)	3등급+ (2.83)	3등급- (3.19)	3등급- (3.16)	3등급- (3.09)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3] 감사위원회 활동 ⑬

참고 계열사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법 및 결과(계속)

• KB의 계열사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등급 정의

평가 등급	정 의
1등급	평가항목이 모두 우수하여 내부통제 효과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조직 전반에 완전하게 정착되어 유사 규모 계열사 또는 업권 내 최고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로 회사의 업무 및 규모에 적합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이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여 내부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2등급	평가항목 일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내부통제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되어 가는 단계로 유사 규모 계열사 또는 업권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상회하는 양호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일부 미비점이 전반적인 내부통제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우수하여 이러한 미비점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시에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3등급	평가항목 일부가 미흡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일부 결함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태이나, 유사 규모 계열사 또는 업권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내부통제상 미비점 또는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통해 신속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등급	평가항목 일부가 취약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상당한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유사 규모 계열사 또는 업권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하회하는 취약한 수준임.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저하, 회사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의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
5등급	평가항목의 대부분이 취약하고 내부통제절차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지주 등의 즉각적이고 밀착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유사 규모 계열사 또는 업권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상당히 하회하는 극도로 취약한 수준임. · 적절한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손실 또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Ⅲ. KB금융지주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_3] 감사위원회 활동 ⑭

✓ 내부신고자제도 운영

- 그룹 임직원이 부당업무처리 또는 비위행위 등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내부고발제도 운영
 - 지주회사 내부감사부서로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성 및 독립성을 확보차원에서 직접 조사 및 사후관리 실시
 - 미국 SOX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제도 등에 위배되는 부정회계처리 행위도 제보대상으로 운영
 - 내부자신고 전용site, 내부제보전용 전화 또는 이메일, 등기우편 등 다양한 제보채널을 상시 운영
 -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및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등 일체의 불리한 대우 금지

IV. Q&A

Q&A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붙임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기준(안)

〈붙임1〉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기준(안)

전문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분식회계·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기구의 감시, 통제 강화 등 그 역할과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 및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일부 감사위원회가 법규인식 부족 및 감독책임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내부 감사기구의 감시, 통제 강화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모범기준은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최선관행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과 구성]

우리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모범기준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현행 법령상의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모범기준의 내용은 전문과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구성·선임 및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등 여섯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범기준의 적용]

이 모범기준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비상장기업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모범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기업규모, 업종 등 기업이 처한 구체적 환경 및 특성에 따라 이 모범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 등을 포함하여 이 모범기준보다 더 강화되거나 우선 적용되는 관련 법규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업이 처한 환경 및 특성에 따라 보충적으로 이 모범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내부감사기구

1.1 감사위원회

1.1.1 (감사위원회 설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기업은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1.1.2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1.3 (권한과 책임)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책임은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4 (독립성과 객관성)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내부감사부서

1.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1.2.2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2.1 감사위원회 구성

2.1.1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는 회의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2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소한 한명 이상의 회계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1.3 (감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구성 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감사위원 선임과 종임

2.2.1 (감사위원 선임)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감사위원은 이사선임 안건과 분리하여 별도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2 (대주주 의결권 제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2.2.3 (감사위원 추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4 (감사위원 종임사유)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위원은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5 (감사위원 임기) 감사위원은 임기를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2.2.6 (감사위원회 결원 시 충원)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인 이상의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의 수가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3.1 (공정성) 감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2 (독립성) 감사위원은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주요주주와 혈연 등 특수한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

2.3.3 (전문성) 감사위원은 감사와 관련된 법규, 재무제표 작성원칙, 감사인의 판단 등 재무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3.4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3.5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사회, 주주, 채권자,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 운영

3.1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3.1.1 (운영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1.2 (규정개정) 이사회는 경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위임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2 감사위원회 활동

3.2.1 (감사위원회 활동계획)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 및 비회의 활동과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3.2.2 (회의) 감사위원회가 모든 안전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3.2.3. (회의참석대상)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 부서장 그리고 외부감사인 등에게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3.2.4. (회의 빈도 및 소집권자)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개별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임시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2.5 (회의록 작성 및 유지) 감사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감사위원별로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2.6 (회사 정보제공 및 지원) 회사는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회의개최 이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있다. 아울러, 감사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2.7 (회의 이외의 활동) 감사위원회는 회의 이외에도 감사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방문, 비공식회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감사위원들이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회의 이외의 활동도 지원하여야 한다.

3.3 감사위원회 평가

3.3.1 (원칙)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위원회 평가결과는 감사위원의 보상 및 재선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3.3.2 (평가항목)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 감독,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업무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포함하며 감사위원회 활동전반을 포괄한다.

3.3.3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평가는 설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매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을 권고한다.

3.4 감사위원 보수

3.4.1 (원칙)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2 (보수산정기준) 감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은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3.4.3 (보수결정권한) 감사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이사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감사위원별로 투입시간, 업무내용, 책임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가 있는 경우 보상위원회가 감사위원의 보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4 (보수지급유형 및 범위)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보수는 월급, 상여금, 수당, 퇴직금, 주식부여,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편익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3.5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3.5.1 (원칙)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3.5.2 (교육유형)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은 감사위원 선임 후 제공되어야 하는 입문교육과 감사위원 업무수행 과정에 제공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5.3 (교육내용) 감사위원의 입문교육은 감사위원회 업무내용 및 역할과 책임 그리고 회사의 경영환경, 주요이슈 등 감사위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며, 기존 감사위원의 보수교육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4.1. 직무와 권한

4.1.1 (주요 감사업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내부 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 내부 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과 주주총회에의 사후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 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4.1.2 (권한사항)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회사내 관련 정보에 대한 사항
-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참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1.3 (감사위원의 직무수행) 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4.1.4 (의무)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1.5 (책임)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

리 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1.6 (감사체계의 수립) 감사위원회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4.2 재무보고

4.2.1 (재무보고)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어의 정확한 재무보고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실적예측정보의 정합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감독하여야 한다.

4.2.2 (회계기준의 타당성 평가) 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은 정확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므로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4.2.3 (회계 및 재무기능의 평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재무기능 담당부서가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회계 및 재무기능을 총괄하는 경영진이 적절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4.3 내부신고

4.3.1 (내부신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불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신고에 대한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4.4.1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의무이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4.4.2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4.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4.4.4 (리스크관리시스템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조직이 부정을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감독하고, 부정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윤리·준법경영 현황을 평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4.5 내부감사부서

4.5.1 (내부감사부서의 구성)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5.2 (내부감사부서의 감독)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4.5.3 (내부감사부서의 활동 관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4.5.4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자격)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사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5.1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5.1.1 (외부감사인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 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선임 후에는 해당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1.2 (외부감사계약의 검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감사시간, 감사보수, 독립성, 전문성(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경험, 감사인력의 경력, 중점감사분야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조건이 당초 선임단계에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5.1.3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 사전협의) 감사위원회는 감사계약 체결 후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5.2 외부감사 실시단계

5.2.1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의사소통)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5.2.2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점검)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므로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재무제표(주식 포함)를 직접 작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2.3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외부 정보 수집) 감사위원회는 회사 관련 외부시장 정보(환율이나 유가 변동, 원재료가격 변동 등)와 내부정보(회사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계약사항 변경 등)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외부감사인과 공유하여야 한다.

5.2.4 (외부감사과정에 대한 점검) 감사위원회는 감사계약대로 외부감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5.2.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은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은 경우에 경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외부감사인이 향후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5.3 외부감사 종료단계

5.3.1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3.2 (외부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5.3.3 (회계 관련 평가 및 추정에 대한 검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시 적용된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 기초자료 등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아 검증하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5.3.4 (외부감사의견에 대한 평가) 감사의견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고, 그 처리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5.3.5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평가하여 차기 연도의 감사계획 수립과 외부감사인 선임시 반영하여야 한다.

6.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6.1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6.1.1 (감사위원회 권한의 명확화 및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권한과 성과를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이사회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6.1.2 (감사결과의 이사회 보고)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1.3 (이사의 부정행위 등의 보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1.4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견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간에 의견불일치가 있을 때,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사위원회는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2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

6.2.1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관련 주요내용 공시)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관련 내역을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6.2.2 (평가결과 보고 및 공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및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6.2.3 (재무제표 관련 주요 내용의 공시)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사회 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고려할 사항이 사업보고서에 공시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6.2.4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주주총회 참석) 감사위원회 위원장(필요 시 감사위원 포함)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6.2.5 (감사위원의 의견진술권) 감사위원은 중요한 안전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6.2.6 (주주 및 채권자와의 의사소통)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요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주요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붙임2

감사 운영 모범기준(안)

〈붙임2〉

감사 운영 모범규준(안)

전문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분식회계·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기구의 감시, 통제 강화 등 그 역할과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감사는 업무 및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일부 감사가 법규인식 부족 및 감독책임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형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사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내부 감사기구의 감시, 통제 강화와 관련한 감사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모범규준은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 운영 최선관행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과 구성]

우리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모범규준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현행 법령상의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모범규준의 내용은 전문과 내부감사기구, 감사 선임 및 자격요건, 감사 활동, 감사의 역할과 책임,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등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범규준의 적용]

이 모범규준은 내부감사기구로 감사를 둔 상장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비상장기업도 이 모범규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기업규모, 업종 등 기업이 처한 구체적 환경 및 특성에 따라 이 모범규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 등을 포함하여 이 모범규준보다 더 강화되거나 우선 적용되는 관련 법규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업이 처한 환경 및 특성에 따라 보충적으로 이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내부감사기구

1.1 감사

1.1.1 (상근감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내부감사기구로 감사를 두어야 한다.

1.1.2 (감사 규정 제정) 회사는 감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1.3 (권한과 책임)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책임은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이다. 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4 (독립성과 객관성) 감사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내부감사부서

1.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를 둔 회사는 감사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감사지원조직, 내부감사담당 실무자)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2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규정) 회사는 감사 산하에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감사지원조직, 내부감사담당 실무자)를 설치한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2. 감사 선임 및 자격요건

2.1 감사의 선임과 종임

2.1.1 (감사선임) 감사는 회사와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1.2 (대주주 의결권 제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2.1.3 (감사추천) 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감사후보추천위원회가 주주총회에 감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권고한다.

2.1.4 (임기) 감사는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3년 임기를 보장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2.1.5 (중임사유) 감사가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는 사임할 것을 권고한다.

2.1.6 (결원시 충원) 감사가 결원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충원되어야 한다.

2.2 감사의 자격요건

2.2.1 (공정성) 감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독립성) 감사는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직위를 겸임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이사, 집행이사 및 최대주주와 경제적, 신분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

2.2.3 (전문성) 감사는 감사업무와 관련된 법규, 재무제표 작성원칙, 감사인의 판단 등 회계와 감사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감사 활동

3.1 감사운영규정

3.1.1 (운영규정) 이사회는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1.2 (운영규정 개정) 이사회는 경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위임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2 감사의 활동

3.2.1 (감사의 활동계획) 감사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2.2 (상근) 감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3 (감사록 작성 및 유지) 감사는 감사수행 후 감사실시 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

3.2.4 (회사 정보제공 및 지원)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2.5 (감사활동) 감사는 감사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감사업무이외에 도 현장방문, 비공식회의 등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3.3 감사의 평가

3.3.1 (원칙) 감사는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3.3.2 (평가항목) 감사평가항목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 감독,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업무와 주주총회가 위임한 업무를 포함하며 감사 활동전반을 포괄한다.

3.3.3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 감사평가는 설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매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3.4 감사의 보수

3.4.1 (원칙) 감사는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3.4.2 (보수산정기준) 감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상근여부, 감사업무에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감사가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3.4.3 (보수결정권한)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할 것을 권고한다.

3.4.4 (보수지급유형 및 범위) 감사에게 제공하는 보수는 월급, 상여금, 수당, 퇴직금, 주식부여,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편익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3.5 감사에 대한 교육

3.5.1 (원칙) 감사는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회사는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3.5.2 (교육유형) 감사에 대한 교육은 감사선임 후 제공되어야 하는 입문교육과 감사업무수행 과정에 제공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5.3 (교육내용) 감사는 선임 후 감사업무내용 및 역할과 책임 그리고 회사의 경영환경, 주요이슈 등 감사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한 입문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 선임된 감사의 경우에도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사업무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감사의 역할과 책임

4.1. 직무와 권한

4.1.1 (주요 감사업무) 감사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내부 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 내부 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과 주주총회에의 사후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감사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4.1.2 (권한사항) 감사는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다음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회사내 관련 정보에 대한 사항
-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참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1.3 (감사의 직무수행)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4.1.4 (의무)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1.5 (책임)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1.6 (감사체계의 수립) 감사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4.2 재무보고

4.2.1 (재무보고) 감사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에의 정확한 재무보고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특히 감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실적예측정보의 정합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감독하여야 한다.

4.2.2 (회계기준의 타당성 평가) 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은 정확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므로 감사는 회사가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4.2.3 (회계 및 재무기능의 평가)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재무기능 담당부서가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회계 및 재무기능을 총괄하는 경영진이 적절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4.3 내부신고

4.3.1 (내부신고) 감사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불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감사는 그러한 신고에 대한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4.4.1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감사의 의무이다. 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4.4.2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4.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4.4.4 (리스크관리시스템 감독) 감사는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조직이 부정을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감독하고, 부정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윤리·준법경영 현황을 평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4.5 내부감사부서

4.5.1 (내부감사부서의 구성)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5.2 (내부감사부서의 감독) 감사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4.5.3 (내부감사부서의 활동 관리) 감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4.5.4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자격)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사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5.1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5.1.1 (외부감사인의 선임) 감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 여부 등 양적 요소

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선임 후에는 해당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1.2 (외부감사계약의 검토)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감사시간, 감사보수, 독립성, 전문성(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경험, 감사인력의 경력, 중점감사분야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조건이 당초 선임단계에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5.1.3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 사전협의) 감사는 감사계약 체결 후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5.2 외부감사 실시단계

5.2.1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의사소통)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5.2.2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점검)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므로 감사는 회사가 재무제표(주식 포함)를 직접 작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2.3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외부 정보 수집) 감사는 회사 관련 외부시장 정보(환율이나 유가 변동, 원재료가격 변동 등)와 내부정보(회사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계약사항 변경 등)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외부감사인과 공유하여야 한다.

5.2.4 (외부감사과정에 대한 점검) 감사는 감사계약대로 외부감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5.2.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은 경우) 감사는 외부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은 경우에 경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외부감사인이 향후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5.3 외부감사 종료단계

5.3.1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3.2 (외부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5.3.3 (회계 관련 평가 및 추정에 대한 검토)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시 적용된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 기초자료 등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아 검증하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5.3.4 (외부감사의견에 대한 평가) 감사의견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고, 그 처리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5.3.5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는 외부감사인을 평가하여 차기 연도의 감사계획 수립과 외부감사인 선임시 반영하여야 한다.

6.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6.1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6.1.1 (감사 권한의 명확화 및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감사는 자신의 권한과 성과를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이사회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6.1.2 (감사결과외 이사회 보고) 감사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1.3 (이사의 부정행위 등의 보고)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1.4 (감사와 이사회 의견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와 이사회 간에 의견불일치가 있을 때,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사는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2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

6.2.1 (감사의 권한과 활동 관련 주요내용 공시)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감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 관련 내역을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6.2.2 (평가결과 보고 및 공시) 감사는 감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및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감사 평가결과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6.2.3 (재무제표 관련 주요 내용의 공시) 감사는 기업의 계속가능성에 대한 이사회 평가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고려할 사항이 사업보고서에 공시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6.2.4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 감사는 감사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감사는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6.2.5 (감사의 의견진술권) 감사는 중요한 안전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6.2.6 (주주 및 채권자와의 의사소통) 감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요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감사는 주요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